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31025 판결 [차량매매대금 등 반환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강현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0,000원 및 2020. 3. 23.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가. 피고는 자동차매매업, 할부금융 알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6.

26.경 전(前) 차주인 소외 C로부터 D 중고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5.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2019. 8. 16.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며, 또 2019. 8. 15. E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의 저금리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음으로써 위 자동차의 매수대금 및 그 이전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자동차 매매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성능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주행거리 2,000km 이내, 보증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이고, 또 그 성능보증범위에는 ‘실린더헤드/블록 및 그 내부 부품’도 포함되어 있다.3) 라. 원고가 2019. 8. 1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그 차량 엔진에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인젝터4) 교환이나 터보차저5) 교환 등 차량 엔진의 수리와 관련하여 총 707만 원6)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손상이 있어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위 차량 엔진의 손상은 이 사건 자동차의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객관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를 위해 지출된 대금 2,100만 원의 반환 및 차량수리비 707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다(주위적 주장).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손상 등을 알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책임보험의 성능보증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날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취소권 행사의 주장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위 2,100만 원의 반환 및 총 1,007만 원(= 707만 원 +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예비적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차량의 계약특성상 양수인은 차량을 인수 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인지 후 계약을 진행한다. 매매업자 양도인은 향후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양수인은 차량보증에 관하여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여 추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하자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성능보증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하자를 인식하였음에도 그 수리를 미루어왔고, 그로 인하여 성능보증기간이 도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 확대된 것과 같은 실질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피고는 전 차량 소유자가 F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내역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제4호증)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성능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대금은 1,280만원에 불과한바, 이를 초과하여 대금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특정물 매매에 있어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과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한편,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으로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나(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2) 나아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하자담보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는 확대손해의 배상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1) 우선적으로, 원고 주장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엔진 손상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의 내용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10. 16. 이전에 그 차량 엔진 손상 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자동차의 전 소유자였던 C는 2019. 5. 24.7) ‘차량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주행중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를 F 수리센터에 입고하였고, 담당정비사는 점검 후 ‘차량 엔진 중 3번 실린더 블록에 손상이 있어 엔진오일이 과다 유입되었고, 또 터보 임펠러8) 손상으로 인하여 엔진 내부에 쇳가루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엔진 교환 및 터보 교환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특별한 수리 없이 2019. 5. 30. F 수리센터에서 출고되었고(관련 작업자 등록내용에 엔진 및 터보 교환 등의 수리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없다), 위 2019. 5. 30.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최종 인도받은 2019. 8. 16.까지 위 차량 엔진 등의 손상에 대한 수리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교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차량 엔진의 교환, 수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진 날은 2019. 6. 28.이고, 해당 점검작업을 수행한 소외 G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그

점검과정에서 차량 엔진 등의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엔진 구성품을 탈거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점검방식에 의하여 그 성능·상태를 점검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9)). 또한, 위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단순 수리 이력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9. 8. 22. 해당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수리한 것인지를 묻자, 피고 측은 ‘일반 도색과 관련하여 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2019. 8. 16. 당시) 터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등 그 차량 엔진에 손상이 있는 상태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측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4. 피고 측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고 항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오토스탑 기능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의 시동 불량 현상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 점검을 처음 받은 시점은 2019. 10. 16.이고, 원고는 그 무렵 비로소 위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증권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2020. 3. 22. 기준 차량가액은 2,068만 원이고, F 수리센터가 발급한 견적서에 의하면, 그 차량 엔진 손상 등을 교체 수리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교체 수리로 인해 예상되는 감가상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책임보험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등을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권리와 이 사건 책임보험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권리는 그 발생원인 및 근거와 내용을 달리 하는 별개의 것인 점, ②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필로 추가 기재된 부분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객관적 하자’ 또는 ‘육안상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피고의 책임까지도 면책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권리의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권리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엔진 손상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은 위 책임보험의 성능보장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날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책임보험의 체결사실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부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용은 일종의 확대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부담한다.4) 다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가액이 1,280만 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대금, 이전비 및 성능보험비 등으로 총 20,401,900원¹⁰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9. 8. 15. 총 2,1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게 할부 잔금 598,100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20,401,9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20,40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전비 및 성능보험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신뢰하고서 원고가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수리 등을 위하여

총 707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대손해금 70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그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

-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
- 2)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그 계약연월일이 '2019. 8. 15.'로 기재되어 있다.
- 3) 피고의 2020. 11. 10.자 준비서면 및 제3회 변론조서, 이 법원의 2021. 3. 29.자 석명준비명령과 원고의 2021. 3. 31.자 준비서면 및 제5회 변론조서 등 참조
- 4) 연료 분사 노즐로서, 액체 연료를 분무화하여 엔진 실린더의 가장 가까이에 연료를 최종 공급하는 장치이다. 인젝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연비 감소 및 출력 저하, 매연 발생, 시동 불량 등이 수반될 수 있다.
- 5)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turbine)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시켜 실린더로 보내어 출력을 높이는 장치이다.

6) 2019. 10. 16.자 1,600,000원 + 2019. 10. 22.자 220,000원 + 2019. 11. 5.자 4,800,000원
+ 2020. 1. 11.자 450,000원

7) 피고가 위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날인 2019. 6. 26.경 이전의 시점이다.

8) 터보차저 팬

9) 이와 달리 2019년 5월경 F 수리센터에서는 엔진 구성품의 탈거 후 그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졌다.

10) 21,000,000원 - 598,100원